

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이천시장

2. 제출일자 : 2002.7.3

3. 관련규정

-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
-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조례
- 지방재정법 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제1항제4호
- 국유재산법 제24조(사용·수익허가)제1,2항
-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(파견근무)제1항
-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(민간위탁의 기준)제1항

4. 검토내용

- 본 조례안은 지난 2001년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1999년1월11일 제정 공포된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설치및지원조례에 근거하여 1999년3월9일 설립된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가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국제도자공모전 등 추후의 도자관련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엑스포단지 안의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2002년2월25일 동조례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관내 시설유지와 관련 행사의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- 제1조는 본조례안의 목적을 규정

- 제2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

(제55회 -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)

동법인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을 할 수 근거를 마련

- 제3조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제4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(파견근무)에 근거하여 동법인에 이천시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제5조는 시장이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제6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(대통령령) 제11조 (민간위탁의 기준)에 근거하여 이천시 사무의 일부를 법인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제7조는 본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

4. 검토내용

- 본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원하려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는 도조례상으로는 제1조(목적)에서 "경기도"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상으로는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으로 설립되어 있고, 도조례 제4조(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)에 의하면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예산으로 법인운영경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검토가 요구되나 개별법인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와의 관계를 떠나 이천시 자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조례안 자체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※ 참고자료

지방재정법

제14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국유재산법

제24조 (사용·수익허가) ①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- ②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지방공무원법

제30조의4 (파견근무)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·다른 지방자치단체·국가기관·공공단체·정부투자기관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1997.12.13>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 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

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 및 지원조례 [소관부서 : 관광과]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"법률"이라 한다)에 따라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) 경기도 국제공모전 개최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또한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도 충당한다.